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 731-6156 / 전송 (02) 731-6562
 처리부서 : 법무담당관 (시청본관 3층) / 담당자 : 윤영권

문서번호 법무 11010-1000
 시행일자 1998. 6. () (년)
 1998. 6. 5
 (경유)
 수신 내부 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년	98
기획관리실장	전결	
법무담당관	[인]	
법제제장	[인]	
기안	윤영권 [인]	
		협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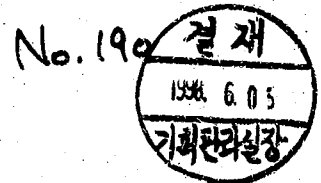
제목 문서평가심의회규정중개정규정 발령

훈령제 884 호

1. 서울특별시문서평가심의회규정중개정규정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38조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

- 가. 발령예정일 : '98. 6. 10 (수)
- 나. 일련번호 : 서울특별시훈령 제884호

- 첨부 : 1. 발령목록 1부.
 2. 발령안 1부. 끝.



서울특별시장

(제2안)

수신 : 공보담당관

제목 : 훈령 시보 게재

1. 서울특별시문서평가심의회규정중개정규정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38조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시기 바랍니다.

- 가. 발령예정일 : '98. 6. 10 (수)
- 나. 일련번호 : 서울특별시훈령 제884호

- 첨부 : 1. 발령목록 1부.
2. 발령안 2부. 끝.

서울특별시

(제3안)

수신 : 시민과장

제목 : 훈령 발령 통보

1. 서울특별시문서평가심의회규정중개정규정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38조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도록 조치하였으니 시행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발령예정일 : '98. 6. 10 (수)

나. 일련번호 : 서울특별시훈령 제884호

첨부 : 1. 발령목록 1부. 끝.



서울특별시



훈령 발령 목록

1건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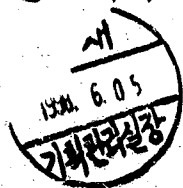
연 번	법 규 명	번 호	주 관 부 서
1	서울특별시문서평가심의회규정중개정규정 제884호	제884호	시민과
	“이하 여백”		

서울특별시문서평가심의회규정중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8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장 직무대리 강 덕



서울특별시문서평가심의회규정중개정규정안

1.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법률 제5242호, '96. 12. 31) 및 동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5498호, '97. 10. 21)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법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를 별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고
-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문서평가심의회"에서 정보공개심의회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심의회 설치·운영 근거 규정 추가 (안 제1조)

· 현행 : 사무관리규정 제31조의2 제2항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 추가

※정보공개심의회외 기능을 문서평가심의회에서 수행함에 따른 근거규정 추가

나. 심의회 심의사항 추가 (안 제2조제5호·제6호)

(1)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한 심의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다. 간사 (안 제6조제2항)

(1) 현 행 : 문서관리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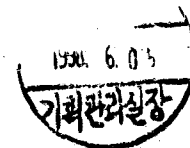
(2) 정보공개관련사항심의시 : 민원행정계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제16조, 제1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항

※ 관련내용 별첨

나. 예산조치 : '98 기정예산에 반영되었음.



서울특별시훈령 제 884 호

서울특별시문서평가심의회규정중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문서평가심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사무관리규정 제31조의2 제2항”을 “사무관리규정 제31조의2 제2항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로 한다.

제2조제5호를 제7호로 하고, 동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한 심의
6.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 ② 간사는 시민과 문서관리계장이 된다. 다만, 제2조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때에는 민원행정계장이 간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u>사무관리규정 제31조의2 제2항의</u> 규정에 의거 <u>서울특별시문서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4.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p> <p>제 6조 (간사)① (생략)</p> <p>②간사는 <u>시민과 문서관리계장이 된다.</u></p>	<p>제1조(목적)<u>사무관리규정 제31조의2 제2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u>.....</p> <p>.....</p> <p>제2조(기능).....</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u> <u>관련한 사항에 대한 심의</u></p> <p>6. <u>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제19조 제2항의</u> <u>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u></p> <p>7. (현행 제5호와 같음)</p> <p>제 6조 (간사)①(현행과 같음)</p> <p>② 간사는 <u>시민과 문서관리계장이 된다. 다만, 제2조제5호 및 제6호의</u> <u>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때에는 민원행정계장이 간사의 직무를 수행한다.</u></p>

서울특별시

우 100 - 744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 전화 (02) 731-6633~4 / 전송 (02) 731-6635
 처리부서 : 시민과 / 담당자 : 이 의 기

문서번호 시민 12313-466

시행일자 1998 . 6. 2.

(경유)

수신 법무담당관

참조

신 결	법무담당관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1998. 6. 2.	결 재	법무담당관
	번호	1806	공 람	
	처리과			
	담당자	이 의 기		

제목 서울특별시문서평가심의회규정(훈령)증개정규정 발령의뢰

서울특별시문서평가심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발령 의뢰하오니 처리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서울특별시문서평가심의회규정증개정규정(안)1부. 끝.

시 민 과(민권장) 曹 枝 煥

서울특별시

우 100 - 744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 전화 (02) 731-6633-4 / 전송 (02) 731-6635
 처리부서 : 시민과 / 담당자 : 이 의 기

문서번호 시민 12313- 466

시행일자 1998 . 5.

(제 1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30년	
행정1부시장	이 의 기	
국 장	이 의 기	
과 장	이 의 기	법무담당관
문서관리계장	이 의 기	민원행정계장
기안	이 의 기	

제목 서울특별시 문서평가심의회 규정(훈령852호) 개정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법률제5242호, '96. 12. 31)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498호, '97. 10. 21)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정보공개심의회를 별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고

2.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단서에 의거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문서평가심의회"에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정보공개심의회 기능을 수행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서평가 심의회규정"을 별첨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문서평가심의회규정중개정규정(안) 1부. 끝.

(제 2안)

수신 : 법무담당관

제목 : 서울특별시문서평가심의회규정(훈령)중개정규정 발령의뢰

서울특별시문서평가심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발령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문서평가심의회규정중개정규정(안) 1부. 끝.

시 민 과 장

서울특별시문서평가심의회규정중개정규정안

제정일자	1998. 12. 12
안건번호	1998. 12. 12
제정일자	1998. 12. 12
안건번호	1998. 12. 12

1.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법률 제5242호, '96. 12. 31)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498호, '97. 10. 21)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법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를 별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고
-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문서평가심의회"에서 정보공개심의회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심의회 설치·운영 근거 규정 추가 (안 제1조)

· 현행 : 사무관리규정 제31조의2 제2항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 추가

※정보공개심의회의 기능을 문서평가심의회에서 수행함에 따른 근거규정 추가

나. 심의회 심의사항 추가 (안 제2조제5호·제6호)

(1)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한 심의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다. 간사 (안 제6조제2항)

(1) 현행 : 문서관리계장

(2) 정보공개관련사항심의시 : 민원행정계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제16조, 제1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항

※ 관련내용 별첨

나. 예산조치 : '98 기정예산에 반영되었음.

서울특별시문서평가심의회규정중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문서평가심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사무관리규정 제31조의2 제2항"을 "사무관리규정 제31조의2 제2항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로 한다.

제2조제5호를 제7호로 하고, 동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한 심의
6.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 ② 간사는 시민과 문서관리계장이 된다. 다만, 제2조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때에는 민원행정계장이 간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u>사무관리규정 제31조의2 제2항의</u> 규정에 의거 <u>서울특별시문서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 style="margin-left: 20px;">1. ~ 4. (생략)</p> <p style="margin-left: 20px;"><신설></p> <p style="margin-left: 20px;"><신설></p> <p style="margin-left: 20px;">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p> <p>제 6조 (간사) ① (생략)</p> <p style="margin-left: 20px;">②간사는 <u>시민과 문서관리계</u> 장이 된다.</p>	<p>제1조(목적)<u>사무관리규정 제31조의2 제2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u>.....</p> <p>.....</p> <p>제2조(기능).....</p> <p>.....</p> <p style="margin-left: 20px;">1. ~ 4. (현행과 같음)</p> <p style="margin-left: 20px;">5. <u>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u> 곤란한 사항에 대한 심의</p> <p style="margin-left: 20px;">6. <u>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제19조 제2항의</u>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p> <p style="margin-left: 20px;">7. (현행 제5호와 같음)</p> <p>제 6조 (간사) ①(현행과 같음)</p> <p style="margin-left: 20px;">② 간사는 <u>시민과 문서관리계장</u> 이 된다. 다만, 제2조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때에는 <u>민원행정계장이</u> 간사의 직무를 수행한다.</p>

시장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법	시행령
<p>第10條(情報公開審議會) ①公共機關은 第9條의 規定에 의한 情報公開與否를 審議하기 위하여 情報公開審議會를 設置·운영한다.</p> <p>②情報公開審議會의 구성·운영 및 機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 및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과 제2조 각호의 기관은 기관의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u>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1개이상 당해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u> 다만, 당해 기관에 심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심의회와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第16條(異議申請) ①請求人이 情報公開과 관련하여 公共機關의 처분 또는 不作為로 인하여 法律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公共機關으로부터 情報公開與否의 決定通知를 받은 날 또는 第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非公開의 決定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公共機關에 書面으로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p> <p>②公共機關은 異議申請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異議申請에 대하여 決定하고 그 결과를 請求人에게 지체 없이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③公共機關은 異議申請을 却下 또는 棄却하는 決定을 한 때에는 請求人에게 行政審判 또는 行政訴訟를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p>	<p>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6조 및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p>③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심의회는 위원장 및 위원은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중에서 지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 또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p>

법 률	시 행 령
<p> ✓ 第19條(第3者의 異議申請등) ①第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開請求된 사실을 봉지받은 第3者는 봉지받은 날부터 3日 이내에 當해 公共機關에 公開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p> <p> ✓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非公開請求를 받은 公共機關이 當해 第3者의 의사에 반하여 公開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公開事由를 명시하여 書面으로 봉지하여야 하며, 公開通知를 받은 第3者는 當해 公共機關에 書面으로 異議申請을 하거나 行政審判 또는 行政訴訟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異議申請은 봉지받은 날부터 7日 이내에 하여야 한다. </p>	